

고 시

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5-16호

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
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3일
전남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해지

○ 지정해지 내역

별 정 우체국명	총 괄 우체국명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해지 사유
소 안	완 도	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14-1	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

○ 지정해지 일자 : 2026. 1. 1.자